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16 발의연월일: 2020. 8. 13.

발 의 자:최인호·박상혁·박재호

강선우 • 전재수 • 김병욱

송옥주 • 이학영 • 조응천

권칠승·박광온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9,300여종 이 있음.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 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 등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2018년 12월 17일자로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

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누구든지 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성명이
	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
	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거
	나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
	<u>다.</u>
<u>②</u> · <u>③</u> (생 략)	$\underline{3}\cdot\underline{4}$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